

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

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(이하 "당사자"라 한다)는,
양국 간 지속하여 온 우호 관계를 고려하고,
국방협력을 통한 기존의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,
양국의 주권에 관한 평등, 상호이익 및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방 분야 내 협력을
도모하기를 바라고,
각 국의 국내법과 상충하지 아니하며 국제적 차원에서의 책무를 훼손하지 아니하는
선에서 각 국의 국내 및 국제 정책에 따라 이 협정을 이행하기를 희망하며,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1조

목 적

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의 관심 분야 내 전문성 및 지식 교류를 통해 국방 협력을
증진하는 것이다.

제2조

당사자의 권한 당국

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.

가. 대한민국을 위하여, 대한민국 국방부

나. 몽골을 위하여, 몽골 국방부

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제5조 제2항의 방위장비 및 물자 이전, 인수 또는 일시적인
반입과 관련된 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몽골
국방부이다.

제3조

국방협력의 범위

당사자는 그들의 국내 법령 및 정책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.

가. 군사교육, 훈련, 스포츠 및 문화교류, 정보 및 경험 교환을 통한 국방 분야에서 양자 교류
증진

나. 군사 의료, 과학, 기술, 연구 개발 분야 협력 증진, 그리고

다. 그 밖에 상호 합의된 국방 분야의 협력

이 조에 명시된 분야 내 세부적인 협력 활동은 당사자가 상호 결정한다.

제4조

국방정책 실무회의

이 협정의 관리, 감독 및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한다.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과 몽골에서 교차로 개최한다.

제5조

비용 협의

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, 방문 당사자는 접수국 영역에서 발생한 이 협정의 이행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.

몽골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방위장비 및 물자 이전, 인수 또는 일시적인 반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세금이나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6조

군사비밀정보 보호

2월 15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른다.

제7조

분쟁 해결

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며, 국내 또는 국제 재판소나 제3자에게 해결을 의뢰하지 아니한다.

제8조

최종 조항

이 협정은 무기한으로 체결되며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의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적 수단을 통해 전달한 마지막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.

이 협정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. 그러한 개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.

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라도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를 통해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.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접수된 후 180일째 되는 날에 종료한다.

이 협정의 종료는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활동 또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

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이 협정은 2026년 7월 00일 울란바타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,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.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몽골 정부를 대표하여

서명)

서명)